

대구지방법원 2024. 5. 21 선고 2023가단128402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구고등법원 2024. 11. 19 선고 2024나13778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5. 21 선고 2023가단128402 판결

전문

원 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영남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장익현

피 고 1.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앤씨

담당변호사 김재철

2.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채해

변론종결 2024. 4. 30.

판결선고 2024. 5. 21.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C과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에 2022.

7. 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주식회사 C과 피고 B 사이에 2023. 2. 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주식회사 A은 주식회사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대구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 대하여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구상금 채권

- 1) 원고는 2019. 9. 10.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C이 D은행으로부터 기업운전일반자금 대출을 받는데 따른 대출금채무의 보증을 위하여, 보증원금을 270,000,000원, 대출예정금액을 30,000,000원, 보증기한을 2020. 9. 10.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D은행은 2019. 9. 11. 그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C에게 30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 2) 그러나 C이 2022. 12. 13. 이자를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가 2023. 6. 14. D은행에 281,882,957원(= 원금 270,000,000원 + 이자

11,882,957원)을 대위변제(이하 ‘이 사건 대위변제’라 한다)하였는데, 같은 날 636,160원을 회수하여 그 잔액은 281,246,797원(이하 ‘이 사건 대위변제금’이라고 한다)이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C에 대한 구상채권확보를 위해 대지급한 법적절차비 중 미회수잔액은 1,976,725원(이하 ‘이 사건 대지급금’이라 한다)이고, 2023. 6. 15.부터 현재까지 기간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은 연 8%이다.

3) 따라서 원고는 C에 대하여 283,163,522원(이 사건 대위변제금 281,246,797원 + 이 사건 대지급금 1,916,725원) 및 그 중 이 사건 대위변제금 281,246,797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3.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나. 피고들과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1) 피고 주식회사 A 명의 근저당권설정

가) C은 2022. 6. 16. 피고 주식회사 A과 사이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A은 C에게 2022. 6. 16.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의 매매계약금 90,000,000원, 2022. 6. 16. 공사계약금 48,000,000원, 2022. 7. 1. 공사계약금 51,440,000원, 2022. 11. 3. 1차 중도금 100,000,000원, 2022. 11. 25. 1차 중도금 10,000,000원, 2022. 11. 29. 1차 중도금 100,000,000원, 합계 399,44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C은 2022. 7. 1. 피고 주식회사 A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자 피고 주식회사 A, 채무자 C, 채권최고액 397,1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그런데 피고 주식회사 A은 2022. 12. 1. C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하면서 C이 기지급한 공사대금 399,440,000원을 반환하면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2) 피고 B 명의 근저당권설정

가) C은 2021. 12. 14. 피고 B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B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일괄 매각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확인각서를 작성하였다.

나) C은 2023. 2. 9.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자 피고 B, 채무자 C,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023. 7. 5. 기준 시가는 756,343,640원(E 사건의 C 소유물건에 대한 총 감정평가액 중 토지 감정평가액 합계 526,240,000원 + 건물 감정평가액 합계 230,103,640원)이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 진행경과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E로 F은행의 신청에 따른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말소되었다.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24. 4. 19. 피고 주식회사 A에게 301,412,534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청구권'이라 한다)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원고가 위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해 지급금지가처분을 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이 위 배당금을 수령하지는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5 내지 7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지방법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들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인 피고들에게 담보로 제공한바,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모두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주식회사 A은 C에게 이 사건 배당금청구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및 항변

- 1)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계약은 정당한 채무에 관하여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2)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하여, C은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3)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C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다.

3.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21245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상태 및 그 변화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다70788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 이전 D은행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C은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기 약 5개월 전에 피고 주식회사 A과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원고의 구상금 채권의 성립의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그리고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은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 이후 체결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위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 역시 된다고 할 것이다.

2) 채무자인 C의 채무초과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호증 및 을나 제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C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인 2022. 7. 1. 및 2023. 2. 9.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 ② C이 2022. 6.경 및 2022. 12.경부터 2023. 2.경 사이에 근로자 G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③ C이 H에게 변제기한이 2022. 6. 30.까지였던 약정금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 ④ C이 2022. 7.경에는 근로자 I에게 임금 1,988,8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그 임금을 대지급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이 2022. 8. 22.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가압류하기도 한 사실, ⑤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C의 적극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태양광발전설비 2식의 가액은 837,843,640원이고, C의 소극재산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인 2022. 7. 1. 및 2023. 2. 9. 기준으로 각 1,185,549,156원, 1,606,023,416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C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3)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가) 판단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고), 채무자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보건대,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제1 및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특정채권자인 피고들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므로, 이는 정당한 채무에 관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채무자인 C 및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C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은 것이므로, 피고 B이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등 참조), 비록 채무자가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 추진의 의도였다 하더라도 신규자금의 융통 없이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자신의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0807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2921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보건대, 피고 B은 2021. 12. 14. C과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하기로 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 B이 1억 7,000만 원, 김경기가 1억 8,000만 원을 송금하여 3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위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및

환매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비용이 많이 들어 설정을 하지 않고 있다가, C이 2022. 9.경부터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불안을 느끼고 2023. 2. 9.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주장 자체로 대여 당시 양도담보권을 실제로 설정한 바 없고 그 이후 신규자금의 융통 없이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것이어서, 이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들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1252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와 같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사계약 및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C의 경영사정은 이미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C은 명백히 채무초과 상태였던 점, ③ 피고 주식회사 A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하루 전인 2022. 6. 15. 공사계약보증금 이행을 위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 중 일부뿐 아니라 아직 지급되지도 않은 중도금을 담보하기 위해 2022. 7. 1.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부터 경료한 점, ④ 피고 B은 C에 금전을 대여한 2021. 12. 14.경에는 C으로부터 별다른 담보를 확보해 두지 않았다가 C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나서야 뒤늦게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점, ⑤ 피고 B도 2024. 4. 2.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C이 2022. 7. 1. 피고 주식회사 A에게 임의로 채권최고액 397,1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을 확인하고 그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자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피고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B은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C이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들에 대한 악의 추정을 반복하여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C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에 한정되나,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 사해행위 전부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34238 판결 등 참조),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참조).

다) C이 2022. 12. 13. 이자를 연체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사실, 이에 원고가 2023. 6. 14. D은행에 281,882,957원을 대위변제하고 같은 날 636,160원을 회수하여 그 잔액은 281,246,797원인 사실, 원고가 대지급한 법적절차비 중 미회수잔액은 1,976,725원이고, 2023. 6. 15.부터 현재까지 기간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은 연 8%인 사실은 앞서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북신용보증재단이 채권액 31,368,600원 및 손해금 703,357원에 관하여 채권계산서를, 구미세무서가 98,300,08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교부청구서를, H이 110,582,902원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이 64,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8,544,88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교부청구서를, J이 배당요구종기일 연장신청서를 각 제출한 사실, C의 채권자로서 위 채권자들 외에 K조합, L,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 등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외에 다른

채권자들이 존재하고, 이들이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할 것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자신의 채권액인 위 281,246,797원을 넘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전부에 대한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상회복의 방법

가) 관련 법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것인바, 이미 배당이 종료되어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익자로 하여금 배당금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명할 것이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A의 이 사건 배당금지급채권에 대하여 지급금지처분을 집행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이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이 부분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명하는 방식으로 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C과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에 2022. 7. 1. 체결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주식회사 C과 피고 B 사이에 2023. 2. 9. 체결된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하기로 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A은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동

별지